

[참고자료] 기후 헌법소원 결정문 주요 문구

기후 헌법소원 결정문의 6가지 주요한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직접 인용 문구를 공유드립니다.

*2020헌마389외 사건 |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위헌 확인 | 결정일 2024.08.29

1. 국가는 기후위기를 위험 상황으로 인지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킬 책임이 있다.

- “기후위기의 위험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건강뿐만 아니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훼손될 위험까지 포괄하므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은 환경권이다.”
-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이 되는 제반 환경이 훼손되고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원인을 줄여 이를 완화하거나 그 결과에 적응하는 조치를 하는 국가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의무도 여기에 포함된다.”
- “지구의 온도 상승 수준이 어떤 임계점에 다다르면, 기후변화가 갑작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개연성도 없지 않다.”
-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배출된 이후 회복할 수 없다는 ‘불가역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2. 모든 국민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한다.”
- “환경권은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
- “기후위기의 위험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건강뿐만 아니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훼손될 위험까지 포괄하므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은 환경권이다.”

3. 국가는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말고 지금 책임져야 한다.

- “국가가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미래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미래 국민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평등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현재의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것임에도, 미래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의욕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하고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
- “특히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임에도 현재의 민주적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약되어 있다.”
- “특히 미래세대일수록 민주적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에 제약이 있으므로, 이러한 영역에서의 입법외무 이행에 대해서는 사법적 심사의 강도가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 “2031년 이후의 구체적인 감축목표에 대한 정량적 기준이 대강이라도 정해져 있지 않으면 단기적인 상황과 여건에만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4.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한국이 저야 할 몫을 반영해야 한다.

-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의 배출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IPCC 보고서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온 과학적 사실이다.”
- “어떤 국가도 기후위기의 원인 제공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이상, 다른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자국 몫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전 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가 그 몫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완화’와 기후변화를 전제로 그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제반활동인 ‘적응’이 모두 필요하다. 지구온난화가 심화해 그 피해가 증가할수록 적응조치에는 더 큰 어려움이 따르고 더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므로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추려면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 양을 줄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 “따라서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는, 배출량 목표치 산정 방식의 관점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목적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치 산정에 고려되어야 하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행동 기준, 법령이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된 행정계획으로서의 제도적 실효성의 측면에서도 기후위기의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량화한 체계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보호조치의 수준을 낮춘 행정계획으로서 법치행정의 법률우위원칙을 위반하였다.”

5.기후위기 대응은 말뿐이 아닌, 지켜지는 제도와 실효적 조치로 담보되어야 한다.

-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사회경제정책 등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결정할 경우, 단기적인 감축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유인이 많을 것인데, 이 때문에 감축비율을 가속화하지 못하면 그만큼 산업구조의 개선 속도도 느려져서 이후의 감축부담이 다시 가중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되는 진전의 속도가 지나치게 느려지면, 감축경로 전체의 모양도 크게 볼록한 형태가 돼 온실가스의 누적 배출량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의 속도가 지나치게 느려지면, 감축경로 전체가 볼록해져 누적 배출량이 많아지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6.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기후정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이행되어야 한다.

-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체계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도록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점진적인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그 제도적 실효성에 대한 심사는 보다 엄격해야 한다.”
-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경로를 계획하는 것은 헌법 이외에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는 규범인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
-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정량적 수준의 설정을 오로지 정부 판단에만 맡길 경우, 단기적 부담만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감축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정책 일관성 유지도 어렵게 된다.”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완화’와 기후변화를 전제로 그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제반활동인 ‘적응’이 모두 필요하다. 지구온난화가 심화해 그 피해가 증가할수록 적응조치에는 더 큰 어려움이 따르고 더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므로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추려면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 양을 줄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정량적 수준의 설정을 오로지 정부 판단에만 맡길 경우, 단기적 부담만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감축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정책 일관성 유지도 어렵게 된다.”